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3394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339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가단4647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D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22. 10. 27.

판결 선고 2023. 1. 1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가단4647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94,492,816원 및 그 중 91,533,002원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하였다].

나. 참가인

피고는 참가인에게 49,625,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동거인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36336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으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판결정본의 보충송달은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므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 ①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F호'이나, 피고는 2014. 1.경부터 2017. 8.경까지 구미시에 거주하면서 G교습소를 운영하였다.
- ② 제1심법원은 소장 부분,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판결정본을 피고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피고의 이모 H가 동거인으로서 이를 모두 수령하였다(소장 부분 2014. 8. 20.,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2014. 9. 24., 판결정본 2014. 10. 22.).
- ③ 이와 같이 피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각 서류를 송달받은 피고의 이모 H를 피고와 동일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동거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H에게 위 각 서류를 교부한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④ 피고는 2021. 4. 20.경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1. 4. 27.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5,200,000원	5.90%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44,500,000원	6.90%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3,600,000원	6.90%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4,000,000원	6.90%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C는 위 각 대출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7. 31. 기준으로 위 각 대출의 잔존 원리금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9,036,209	34,087,369	23,161,165	25,248,259					
전액상환원금	105,619	264,086	448,371	490,945					
전액상환이자	79,352	668,086	408,745	450,467					
중도상환수수료	31,466	5,201	93,318	94,428					
연체료	-180,270	-	-	-					
취급수수료할인	-	-	-	-					
선납할인연체료	-	-	-	-					
선납 이자	-	-	-	-					
가 지급금	-	-	-	-					
전액상환금액	9,072,376	35,024,742	24,111,599	26,284,099					
전액상환 총 합계금	금94,492,816원정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4,492,816원과 그 중 대출원금 91,533,00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참가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I에게 양도하였고, 참가인은 I로부터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돈 중 49,625,5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4(각 약정서)는 피고가 진성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참가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한 참가인의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준규

판사신미진

판사박미영